

수출입 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https://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정보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변조하거나 생활법령정보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출입 검역]

“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합니다.

수출입 검역 대상 동물 및 식물을 수출입할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산생물을 수출입할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검역을 신청하여 각각 동물검역관, 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식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출입 검역	1
1. 수출입 검역 개관	5
1.1. 수출입 검역 개요	5
1.1.1. 수출입 검역 대상에 따른 분류	5
1.2. 수출입 검역 관련 법제	8
1.2.1.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8
2. 동물검역	10
2.1. 동물검역 개요	10
2.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10
2.1.2. 검역절차	12
2.1.3. 검역장소	15
2.2. 수입검역	17
2.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17
2.2.2. 검역신청	23
2.2.3. 검역조사	27
2.2.4. 검역판정	30
2.3. 수출검역	32
2.3.1. 검역신청	32
2.3.2. 검역조사	33
2.3.3. 검역판정	36
3. 식물검역	38
3.1. 식물검역 개요	38
3.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38
3.1.2. 검역절차	40
3.1.3. 검역장소	44
3.2. 수입검역	45
3.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45
3.2.2. 검역신청	49
3.2.3. 검역조사	53
3.2.4. 검역판정	61
3.3. 수출검역	65
3.3.1. 검역신청	65
3.3.2. 검역조사	67
3.3.3. 검역판정	67
3.4. 국내 지역 경유 검역	68
3.4.1. 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68
4. 수산물검역	73
4.1. 수산물검역 개요	73
4.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73
4.1.2. 검역절차	74
4.1.3. 검역장소	76
4.2. 수입검역	77
4.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77
4.2.2. 검역신청	79
4.2.3. 검역조사	81
4.2.4. 검역판정	83

찾기 쉬운 생활법령

4.2.5. 파견검역	84
4.3. 수출검역	86
4.3.1. 검역신청	86
4.3.2. 검역조사	88
4.3.3. 검역판정	89
4.4. 재검역	90
4.4.1. 재검역 등	90
5. 축산물검사	92
5.1. 축산물신고	92
5.1.1.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92
5.1.2. 수입신고	93
5.1.3. 수입금지	95
5.2. 축산물검사	96
5.2.1. 수입검사	96
6. 식품검사	99
6.1. 식품 등의 신고	99
6.1.1.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99
6.1.2. 수입신고	99
6.1.3. 수입금지	102
6.2. 식품 등의 검사	103
6.2.1. 수입검사	103

찾기 쉬운 생활법령

1. 수출입 검역 개관

1.1. 수출입 검역 개요

1.1.1. 수출입 검역 대상에 따른 분류

수출입 검역

수출입 검역

“수출입 검역”이란 해외로부터 감염병이나 해충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공항과 항구 또는 지정된 검역시행장과 검사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검사 등을 말하며, 동물검역, 식물검역, 수산물검역, 축산물검사 및 식품검사 등으로 나누어 각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식물방역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고 있습니다.

동물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초,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1. 우제류(偶蹄類) 및 기제류(奇蹄類)의 동물
2. 개·고양이
3. 토끼
4. 닭·칠면조·오리·거위
5. 꿀벌
6. 위의 1. ~ 4.에 따른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 제외)
7. 위의 1. ~ 6.에 따른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1. ~ 6.에 따른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1. ~ 10.에 따른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13.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4호, 2022. 8. 4. 발령·시행)에 따른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찾기 쉬운 생활법령

동물 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본문).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2항).

동물 수출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여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2항).

식물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1호, 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식물

- √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
- √ 위 식물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함)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흙

-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식물 수입검역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본문).

식물 수출검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하 “식물 등”이라 함)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그 식물 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관하여 식물검역관에게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수산물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포함]

수산물 수입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하려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입한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게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수산물 수출검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 상대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

위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여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축산물검사

수입검사 대상 물건

축산물 수입검사 대상 물건은 축산물로서 식육(食肉)·포장육·원유(原乳)·식용란(食用卵)·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입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

축산물 수입검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해당 축산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식품검사

수입검사 대상 물건

식품수입검사 대상 물건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입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

식품 수입검사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이하 같음)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해당 식품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본문).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1.2. 수출입 검역 관련 법제

1.2.1. 수출입 검역 관련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동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동물 수입검역, 동물 수출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은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산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수산생물 수입검역, 수산생물 수출검역, 파견검역, 재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은 수출입 식물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식물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입금지 물건, 검역시행장, 식물 수입검역, 식물 수출검역, 국내 지역 경유 검역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 등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의 사육·도살·처리와 축산물의 가공·유통 및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축산물 수입신고, 수입금지, 수입검사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동물검역

2.1. 동물검역 개요

2.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동물과 그 사체, 뼈·살·가죽·알·털·발굽·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 및 그 밖에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사료, 사료원료, 기구, 건축, 건조, 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물건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1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 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3조 및 별표 1].

번호	구분	종류
1	우제류(偶蹄類) 동물	우제목: 소과(유우, 육우, 야우, 수우, 야크, 산양, 면양, 영양, 그 밖의 양류 등), 사슴과, 기린과, 낙타과(라마 포함), 하마과, 멧돼지과(돼지 포함) 등
	기제류(奇蹄類) 동물	기제목: 말과(당나귀, 노새, 버새 등), 맥과, 코뿔소과 등
2	개·고양이	식육목: 개과, 고양이과 등
3	토끼	토끼목: 토끼과(가토, 야토 등)
4	닭·칠면조·오리·거위	닭목: 꿩과(닭, 메추리, 꿩), 칠면조과
		기러기목: 오리과(거위, 기러기, 오리, 고니 등)
5	꿀벌	벌목: 꿀벌과(꿀벌에 한함)
6	1. ~ 4.에 따른 동물외의 조류 및 포유동물(고래를 제외함)	상기 이외의 포유동물(고래 제외), 가금 및 조류
7	1. ~ 6.에 따른 동물의 정액·난자 및 수정란	
8	원유(原乳)	
9	멸균처리되지 않은 햄·소시지·베이컨 등 수육(獸肉)가공품, 난백(卵白)·난분(卵粉) 등 알가공품 및 살균처리되지 않은 유가공품	
10	가공처리되지 않거나 멸균처리되지 않은 1. ~ 6.에 따른 동물의 사체·살·뼈·가죽·털·깃털·뿔·발굽·힘줄·내장·알·지방·피·혈분·뇌·골수·오물·추출물·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	
11	1. ~ 10.에 따른 물건을 넣는 용기 또는 포장	

12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및 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	<p>사료·사료원료·건초</p> <p>① 섬유질사료: 자연 상태 그대로 또는 건조한 것, 단순 절단 또는 세절한 것으로 목초, 산야초, 나뭇잎, 고간류(귀리짚, 밀짚, 벼짚, 보릿짚, 수수대, 옥수수대 등), 사료용 근채류, 풋베기사료작물(새싹보리, 수단그라스, 자운영, 청예갈대, 청예밀, 청예보리, 청예벼, 청예수수, 청예옥수수, 청예유채, 청예피, 청예호밀 등), 옥수수 속대</p> <p>② 섬유질 가공사료: 분쇄한 것, 펠릿, 큐브 및 그와 같은 모양의 것으로 섬유질 사료를 분쇄, 가열 등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조사료로서 멸균처리되지 않은 것.</p> <p>③ 그 외: 섬유질사료 및 섬유질가공사료 이외의 것으로 사일리지 제조용 또는 가축에게 직접 급여용 조사료</p> <p>④ 단백질류: 어분(조류 및 포유동물 유래 단백질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우모분, 제각분, 육분, 육골분, 혈분, 육가공부산물, 도축 및 가공도축부산물, 동물성단백질혼합사료, 수지박, 동물성발효사료, 계란분말, 육포</p> <p>⑤ 유지류: 우지, 돈지, 양지, 닭기름</p>
13	<p>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사료·사료원료·기구·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의 범위」(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2-24호, 2022. 8. 4.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사료·사료원료·기구·건초·깔짚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p>	<p>기구, 깔짚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p> <p>① 동물과 함께 수입되는 용기 및 깔짚 등</p> <p>② 소비(巢脾)</p>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

가축전염병

동물 등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가축전염병으로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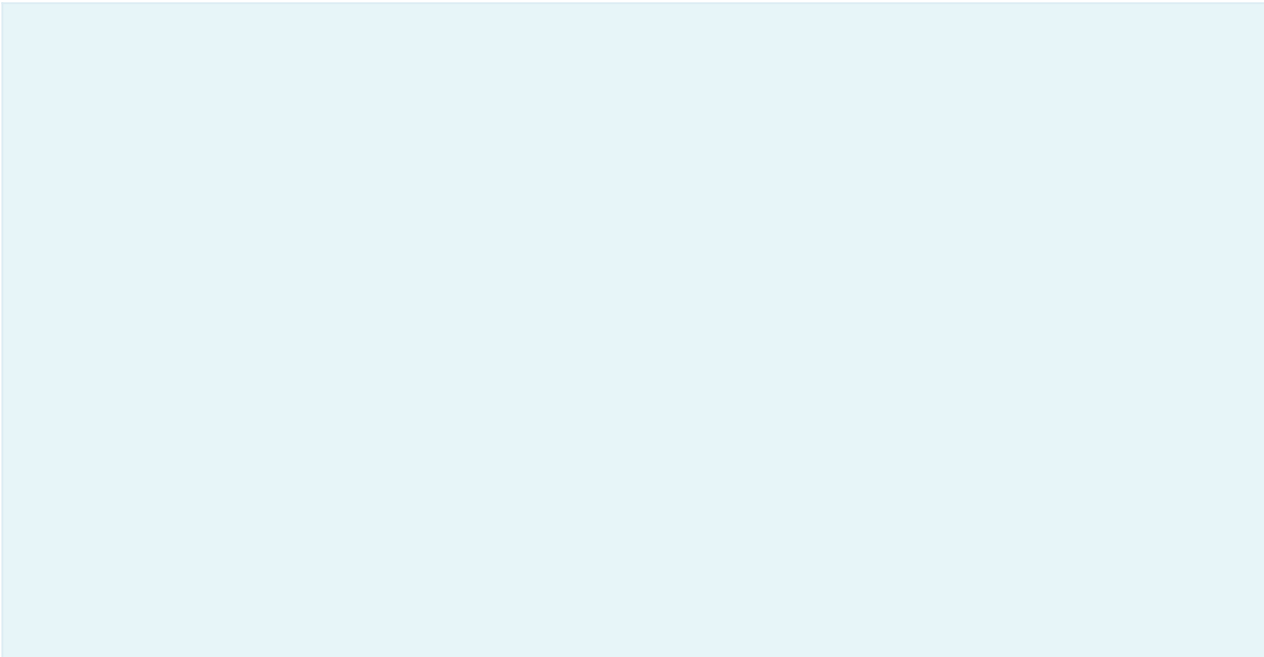
찾기 쉬운 생활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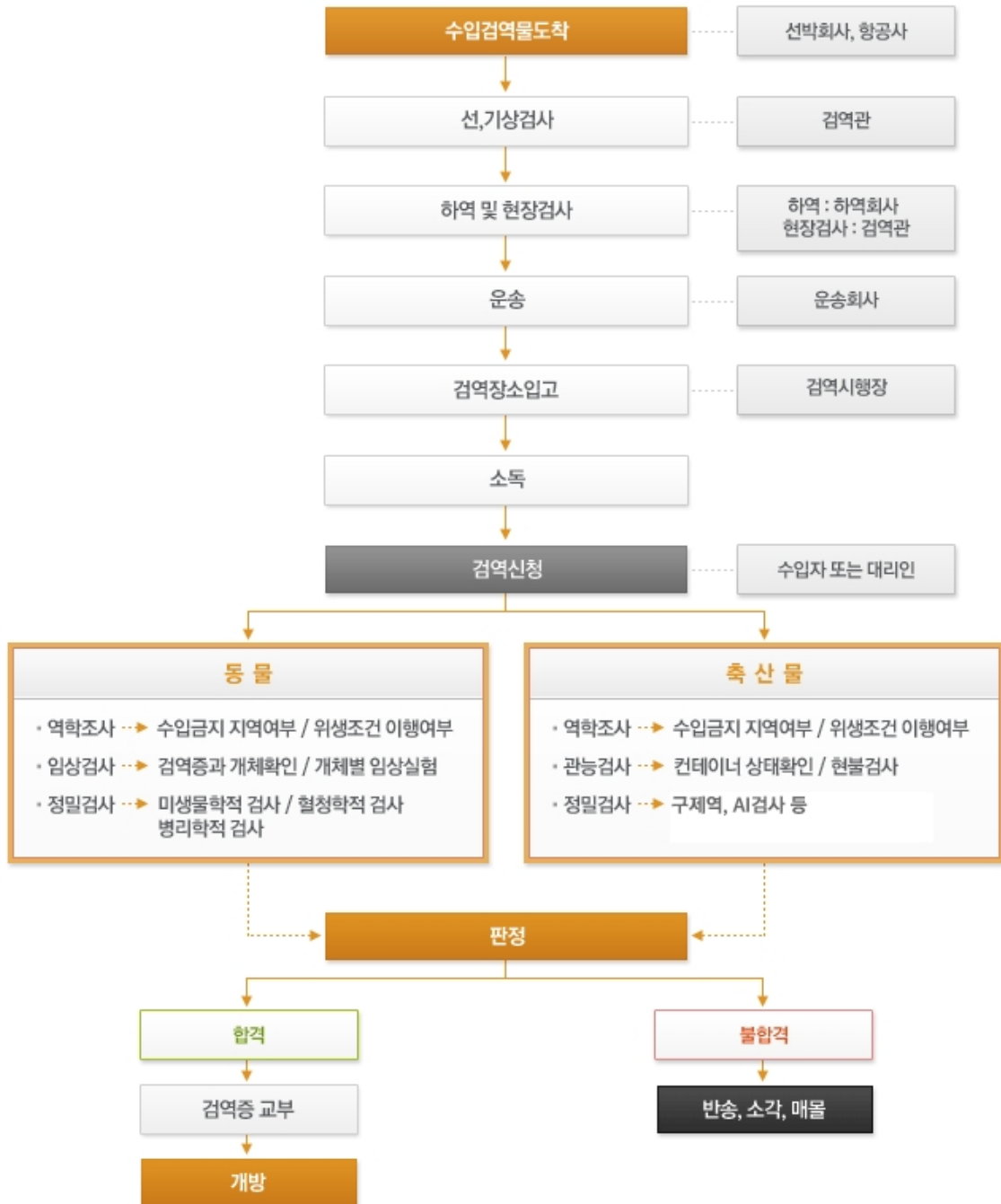
구분	종류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당병, 리프트게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규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媾疫),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타이레리아병(Theileriosis, 타이레리아 팔바 및 애놀라타만 해당함)·바베시아병(Babesiosis, 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만 해당함)·아나플라즈마(Anaplasmosis, 아나플라즈마 마지날레만 해당함)·오리바이러스성간염·오리바이러스성장염·마(馬)웨스트나일열·돼지인플루엔자(H5 또는 H7 혈청형 바이러스 및 신종 인플루엔자 A(H1N1) 바이러스만 해당함)·낭충봉아부패병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腐蛆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소전염성비기관염(傳染性鼻氣管炎)·소류코시스(Leukosis, 지방병성소류코시스만 해당)·소렙토스피라병(Leptospirosis)·돼지전염성위장염·돼지단독·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돼지유행성설사·돼지위축성비염·닭뇌척수염·닭전염성후두기관염·닭전염성기관지염·마렉병(Marek's disease)·닭전염성에프(F)낭(囊)병·토끼출혈병·토끼점액종증·야도병

2.1.2. 검역절차

수입검역 절차

<동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축산물검역검사-수입동물 및 축산물 검역>

사전신고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중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및 10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함]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예정 항구·공항 또는 그 밖의 장소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의 종류, 수량, 수입 시기 및 장소 등을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5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위의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58조제3호).

위의 동물을 수입하는 경우 사전신고 대상 동물별로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 및 「수입동물 사전신고서 제출요령」(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40호, 2022. 10. 5. 발령·시행) 제2조제3항, [별지 제1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말· 면양· 산양·원숭이·개·고양이 등 수입동물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소·돼지·사슴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 전 매월 1일부터 5일까지(제주지역본부장에게 신고되는 소·돼지·사슴의 경우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
말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20일전까지

화물 목록 제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화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 항공사 및 육상운송회사로 하여금 지정검역물을 실은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가 도착하기 전 또는 도착 즉시 화물 목록을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1항).

위의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2항제8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화물 목록을 받았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에게 선박, 항공기, 열차 또는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지정검역물과 제출받은 화물목록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정검역물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는지 등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8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 및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역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검역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찾기 쉬운 생활법령

예방법」 제40조 단서) .

불합격품 등의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면서 일정한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수출검역 절차

<동물 수출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축산물검역검사-수출동물 검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과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동물검역신청서](#) 및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에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검역방법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검역기간 내에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

불합격품 등의 처분

동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면서 일정한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2.1.3. 검역장소

찾기 쉬운 생활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출입 검역은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본문).

“검역시행장”이란 지정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하는 장소를 말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3호).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

다음의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 외에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이하 “검역시행장”이라 함)에서 수출입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2조제1항 단서).

수입검역물 중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출검역물이 시설·장비 등 검역 요건이 갖추어진 가공제품공장·집하장에 있는 경우

국내 가축방역 상황에 비추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전국 검역시행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축산물안전-동물축산물검역검사-국내외 검역시행장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의 검역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은 입항지에 소재한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 [수입검역물 운송신청서](#)(통보서)에 상대국 검역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하면 입항지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1항 및 별지 제17호의7호서식).

입항지에 검역시행장이 소재하지 않은 경우

수입자가 수입축산물을 입항지 외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 가능한 대상

지정검역물 중 검역시행장이 아닌 시설에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2조의3제3항).

역학조사 대상 검역물

- √ 탈지세척수모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 √ 탈모 후 산처리된 수피류(우제류 동물 또는 그 생산물 수입허용지역산)
- √ 육골분 및 우모분(상대국 검역증명서에 습열 섭씨 115도에서 1시간 또는 건열 섭씨 140도 이상에서 3시간 이상 처리된 사항이 명시된 것)

찾기 쉬운 생활법령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역학조사 대상검역물로 정한 지정검역물

타로우 및 지정검역물 외의 의뢰검역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사료

현장검사가 가능한 휴대품 및 소포 우편검역물, 도착당일 검역이 완료되는
정부의뢰검역물·견본품·반려동물·실험연구용 동물 및 축산물

멸균처리된 소해면상뇌증 관련 품목

단순히 경유하는 지정검역물

2.2. 수입검역

2.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하지 못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6호, 제32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

다음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구분	수입금지 지역
----	---------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제 어 제	우제류동물 (반추동물 제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스웨덴·핀란드·프랑스·스위스·아일랜드·영국 이외의 지역
	반추동물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가금류 (가금·초생추·종란을 포함)	미국·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독일·영국·브라질 (초생추·종란에 한함) 이외의 지역
	가금 이외의 조류 및 야생조류	뉴질랜드· 미국· 호주·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폴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벨기에· 독일·캐나다·영국·일본·필리핀·대만이외의 지역
	타조류 (초생추 및 종란을 포함함)	덴마크 이외의 지역
	쇠고기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미국· 캐나다· 칠레· 우루과이·네덜란드·덴마크·프랑스·아일랜드 이외의 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야 생 산 물 품 중 류 육 가 공 품 포 함	돼지고기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스웨덴 · 덴마크 · 핀란드 · 오스트리아 · 멕시코 · 칠레 · 네덜란드 · 스페인 · 아일랜드 · 프랑스 · 스위스 · 이탈리아 (가공품에 한함) · 영국 ·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에 한함) · 포르투갈 · 벨기에 · 폴란드 이외의 지역
	산양고기, 양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사슴고기	호주·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가금육	1. 신선·냉장·냉동 가금육 : 브라질 · 태국 · 미국 · 핀란드 · 리투아니아 · 스웨덴 · 덴마크 · 폴란드 · 프랑스 · 네덜란드 · 헝가리 · 벨기에 · 칠레 · 아르헨티나 · 영국 이외의 지역 2. 열처리된 가금육 : 브라질 · 태국 · 중국 · 프랑스 · 칠레 · 덴마크 · 헝가리 · 폴란드 · 스웨덴 · 일본 · 호주 · 네덜란드 · 영국 · 캐나다 · 미국 · 핀란드 · 리투아니아 · 벨기에 · 아르헨티나 이외의 지역
	캥거루고기	호주 이외의 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자비우육	호주 · 뉴질랜드 · 멕시코 · 아르헨티나 · 우루과이 이외의 지역
동 북 의 생 산 물 품 중	원유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덴마크 · 스웨덴 · 핀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정액	미국 · 캐나다 · 호주 · 뉴질랜드 · 프랑스 · 네덜란드 이외의 지역
	소의 수정란	호주 · 뉴질랜드 · 캐나다 · 미국 이외의 지역
	돼지의 정액	뉴질랜드 · 덴마크 · 미국 · 스웨덴 · 영국 · 아일랜드 · 캐나다 · 프랑스 · 핀란드 · 호주 · 스위스 이외의 지역
	산양, 면양의 정액	호주 이외의 지역
	사슴의 정액 및 사슴 생산물	호주 (정액 제외) · 뉴질랜드 이외의 지역
	식용란	태국 · 미국 · 핀란드 · 스웨덴 · 덴마크 · 스페인 · 폴란드 · 프랑스 · 네덜란드 · 헝가리 · 벨기에 · 독일 · 영국 · 브라질 이외의 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 류 이 외 생 산 물	소해면상뇌증(BSE) 관련품목 • 반추동물의 뼈·뿔 등 (원피 및 우유 제외) • 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육골분·육분·골분·발굽분·건조혈장·각분·기타 혈액제품·가수분해단백질 (hydrolysed protein)·가금설육분 (poultry offal meal)·우모분 (feather meal)· 건조군기름·어분·제2인산칼슘 (dicalcium phosphate)·젤라틴 및 혼합물(상기물품이 혼합된 사료, 사료첨가제, premixture 등)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노르웨이· 루마니아· 마케도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크로아티아· 폴란드· 헝가리·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체코· 일본·캐나다·이스라엘·미국·브라질(36개 국가)
---	--	--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 “소해면상뇌증(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이란 일반적으로 광우병이라고 하는 이것은 소에서 발생하는 만성 신경성 질환으로, 변형 프리온 단백질의 감염으로 신경세포의 공포변성과 중추신경의 해면상 변화가 특징으로 긴 잠복기와 불안, 보행장애, 기립불능, 전신마비 등의 임상증상을 보이다가 결국은 폐사되는 치명적인 진행성 질병입니다. [『소해면상뇌증(BSE) 일반사항』, 2017.07, 1면 참조].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모든 월령(月齡)의 소에서 나온 편도(扁桃)와 회장원위부(回腸遠位部)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나온 뇌, 눈, 척수, 머리뼈, 척주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소의 조직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별 상황과 국민의 식생활 습관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고시하는 물질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수입중단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생조건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수출국에서 소해면상뇌증이 추가로 발생하여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에 대한 일시적 수입 중단 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위의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 수입을 중단하거나 이를 재개하려는 경우 중앙가축방역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

수입금지 예외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수입금지 물건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물건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 또는 밀봉된 컨테이너로 차량·열차에 싣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 “항공기·선박의 단순기항”이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을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봉된 컨테이너 또는 항공기·선박 안의 전용구역에 원상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동물원 관람 목적으로 수입되는 동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입위생조건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한함)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용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시험연구·예방약 제조용 수입허가 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위의 수입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하여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입허가증명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및 별지 제13호서식).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제11조 및 별표 5에 따른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1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동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3항).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화물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물주는 수입 후 지체 없이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동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2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 본문).

재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위의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5항).

동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의 수량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2.2.2. 검역신청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수입검역신청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구분	제출기간
동물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p><u>동물검역신청서</u></p> <p>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동물이 국내로 수입되는 개, 고양이의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번호 및 광견병 항체가(抗體價) 등의 사항을 적은 검역증명서를 말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p>
동물 외의 검역물에 대해 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p><u>축산물(사료 등) 검역신청서</u></p> <p>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1부(해당 지정검역물이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p> <p>수입허가증명서 1부(수입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함)</p>

※ 동물 수입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4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박제품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것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함) 등의 물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관세법」 제240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 중 적법하게 수입된 것(지정검역물만 해당함)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검역에서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하여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

벌칙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6조제2호).

휴대검역물 신고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을 기재한 서면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제1항 단서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수입자의 성명

휴대검역물의 종류·수량

출발지

다음의 경우에는 휴대검역물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자휴대품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한 경우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공항·항만 등에 소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검역관에게 말로 알린 경우

과태료

휴대검역물을 수입할 때 입국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제1항제6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6조 및 별표 3).

찾기 쉬운 생활법령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300	4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위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70	100	2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	300	5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00	750	1,000
여행자 휴대품이 지정검역물 중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5	10	50

우편물검역 신고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동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본문).

다만, 우체국장이 검역을 받지 않은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9조제1항 단서).

벌칙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은 때에 검역을 받지 않거나 검역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때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4호).

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검역신청수수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수수료	비고
동물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만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같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2.2.3. 검역조사

검역방법 등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 등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하 “지정검역물 등”이라 함)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등이 동물인 경우에는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식용축산물 등인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및 인수공통전염병(人獸共通傳染病)의 전파가능성 여부와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축산물 및 그 가공품의 품질을 평가하는 일]를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입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등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행된 검역증명서와 지정검역물 등이 합치하는지를 대조해야 합니다.

동물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 또는 탁송품검역의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6조, 제39조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생후 90일 이상인 경우 ①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고 광견병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인 경우: 당일 ②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③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④ 중화항체가 0.5IU/mL 이하인 경우: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⑤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중화항체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과 광견병 예방접종 후 중화항체가 0.5IU/mL 이상 확인일까지 -생후 90일 미만 또는 광견병 비발생 지역산은 마이크로칩을 이식하여 개체 확인이 되는 경우: 당일 (마이크로칩 이식을 하지 않은 경우: 마이크로칩 이식 완료일까지)
2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5일
3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0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40일 이내
5	영장류 (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30일
6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0일
7	휴대 애완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이내
8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0일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30일
10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5일
11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0일
12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80일
13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14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회복 후 (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15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16	닭 종란	21일
17	오리 종란	28일
18	타조 종란	42일
19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18일 이내
20	소 정액	3일 이내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3일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 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10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23	메추리 종란	17일
24	말 정액	30일 이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 시 상대국의 가축방역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다음과 같이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흥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은 제외함, 해당 동물의 체류기간이 검역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함)

- √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장(이하 “관할 지역본부장”이라 함)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 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증명서를 교부합니다.
- √ 도착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 하여금 출국 시까지 해당 동물이 특이한 증상을 보이는 등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해당 지역 관할 지역본부장에게 신고하도록 조건을 부여합니다.
- √ 해당 수입동물의 화주로부터 위의 신고를 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해당 동물의 이상 유무 등을 파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개·고양이는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동안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것으로서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 √ 대한민국에 단기간 여행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조류는 애완용 조류수입위생조건을 준수한 검역증명서를 구비하고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통관서류 등에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 √ 해당 동물의 검역기간 이내의 것으로서 도착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관할 지역본부(사무소 포함)에서는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확인하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시 검역필증인(「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을 날인합니다.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웨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 √ 관할 지역본부장은 상대국 검역증명서 등과 대조하여 특별관리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 방역상 이상이 없을 경우 검역증명서를 발급합니다.

2.2.4.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동물검역관은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찾기 쉬운 생활법령

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 제4항,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다만, 다음의 검역물인 경우 지정검역물 또는 통관 서류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표지를 하는 것으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 검역물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수입허가를 받은 물건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입검역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을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0조 단서).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 또는 우편물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본문 및 제44조제3항).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3조제6항 단서 및 제44조제3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2.3. 수출검역

2.3.1. 검역신청

검역신청절차

수출검역신청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항,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25조제1항].

[동물검역신청서](#) 또는 [축산물\(사료 등\)검역신청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예방접종증명서 및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병원 등에서 발급하는 건강하거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우려가 없다는 사실)

수출 대상국 요구사항(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함)

※ 동물 수출검역 인터넷 신청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인터넷 검역검사 지원서비스](#) >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6조제1항제3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3호, 별표 19).

검역신청수수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수수료	비고
동물	소, 말, 당나귀, 노새, 면양·산양, 돼지 및 사슴	5만원	신청건당
	개 및 고양이	1만원	
	토끼, 닭·오리·거위 등 가금류 및 꿀벌	3만원	
	그 밖의 동물	2만원	
동물 외의 검역물 (검사수수료를 납부한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만원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19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항).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현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시·도가축방역기관장에게 납부하는 수수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검역수수료 면제

농림축산검역본부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장은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5조의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검사 등을 신청하거나 의뢰하는 경우

지정검역물에 낙인, 그 밖의 표시로 검역증명서의 교부에 같음하는 경우

수출축산물을 검역하는 경우

수입축산물의 검역을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압류·몰수한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무상으로 지원되는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

2.3.2. 검역조사

검역방법 등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지정검역물”이라 함) 수출검역의 검역방법은 다음과

찾기 쉬운 생활법령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본문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7).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해 그 생산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수출되는 지정검역물 중 가공과정별 검사를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검사부터 실시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등의 검역은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동물검역관은 검역시행장에서 관리수의사 또는 검역관리인에게 현물검사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 검사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리수의사 및 검역관리인은 현물검사 결과 불합격 사항 등 특이사항이 있으면 검역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동물검역관은 대한민국과 지정검역물 등의 수출국 간에 수입검역에 관하여 협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합치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지정검역물 수출검역의 검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1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 별표 8).

번호	종류	검역기간
1	개·고양이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2	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7일
3	기제류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4	기제류동물 중 교미시험용 종마 및 암말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5일
5	영장류(non-human primates)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6	닭·칠면조·거위·오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2일
7	휴대 애완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8	병아리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9	초생추를 포함한 타조류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0	토끼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11	식육목 (1,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2	박쥐목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3	그 밖의 동물 (14 및 15의 동물은 제외함)	1일
14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린 동물	회복 후 (살처분 대상 제외함) 10일
15	가축전염성질병에 걸렸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동물 및 이와 함께 사육동물 (14의 동물은 제외함)	가축전염성질병에 전염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까지
16	닭 종란	2일
17	오리 종란	2일
18	타조 종란	2일
19	돼지 정액 (오제스키병 원인체 검사)	2일
20	소 정액	2일
21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7호부터 제12호까지의 지정검역물	2일
22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제13호의 지정검역물	5일
23	메추리 종란	2일
24	말 정액	2일

동물검역관은 상대국에서 요구하는 검역조건에 따라 수출동물 및 수출축산물의 검역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지정검역물이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간을 따로 정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1호, 2024. 7. 31. 발령, 2024. 8. 1. 시행) 제7조제3항].

홍행·경기 또는 전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단기간 체류하는 동물

우리나라에 단기간 여행하는 자가 휴대하는 개·고양이 및 조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인도하는 개

특별한 관리방법을 통해 사육되거나 생산되는 시험연구용 동물로서 쥐, 기니픽, 랫트, 웨렛, 토끼, SPF 종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인정하는 검역물

찾기 쉬운 생활법령

2.3.3.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출검역

동물검역관은 동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동물검역증명서](#) 또는 [대한민국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사료 등\)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해야 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1조제5항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본문, 제4항,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다만, 다음의 검역물인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별표 9부터 별표 14까지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표지로 검역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단서).

공항·항만·우체국 그 밖의 장소에서 현장검역을 하는 지정검역물(휴대검역물 포함함)

견본품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

정부의뢰 검역물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동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의 동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지정검역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화물주에게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지정검역물
- √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 √ 다른 물질이 섞여 들어갔거나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지정검역물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8조제5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사육관리비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물주가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4조제3항 및 제33조제6항 단서).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물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동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3. 식물검역

3.1. 식물검역 개요

3.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식물검역대상물품

다음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흙은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입니다[「식물방역법」 제2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제3조 및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22-32호, 2022. 8. 17. 발령·시행)].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번호	구분	종류
1	식물	<p>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p> <p>위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병해충이 잠복할 수 없도록 가공한 것으로서 다음은 제외함)</p> <p>① 화학약품, 소금, 설탕, 기름, 그 밖에 방부(防腐) 효과가 있는 물질로 방부 처리된 것</p> <p>② 나무 또는 대나무 제품으로서 재가공하지 않고 사용될 수 있는 것</p> <p>③ 솜, 베, 종이, 끈, 그물 등 섬유 제품의 형태로 가공된 것</p> <p>④ 병해충을 죽여 없앤 것으로서 병해충이 다시 침입할 수 없도록 포장한 것</p> <p>⑤ 그 밖에 병해충이 서식할 수 없을 정도로 식물을 가공한 것</p>
2	병해충	<p>진균(真菌)·점균(粘菌)·세균(細菌)·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p> <p>곤충, 응애, 선충(線蟲),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p> <p>잡초(그 씨앗을 포함함)로서 「병해충에 해당되는 잡초」에서 정하는 것</p>
3	흙	<p>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p> <p>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음은 흙으로 보지 않음)</p> <p>① 도토(陶土), 인광(磷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p> <p>②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않은 것</p> <p>③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p>
4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제5호·제6호,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4조, 제5조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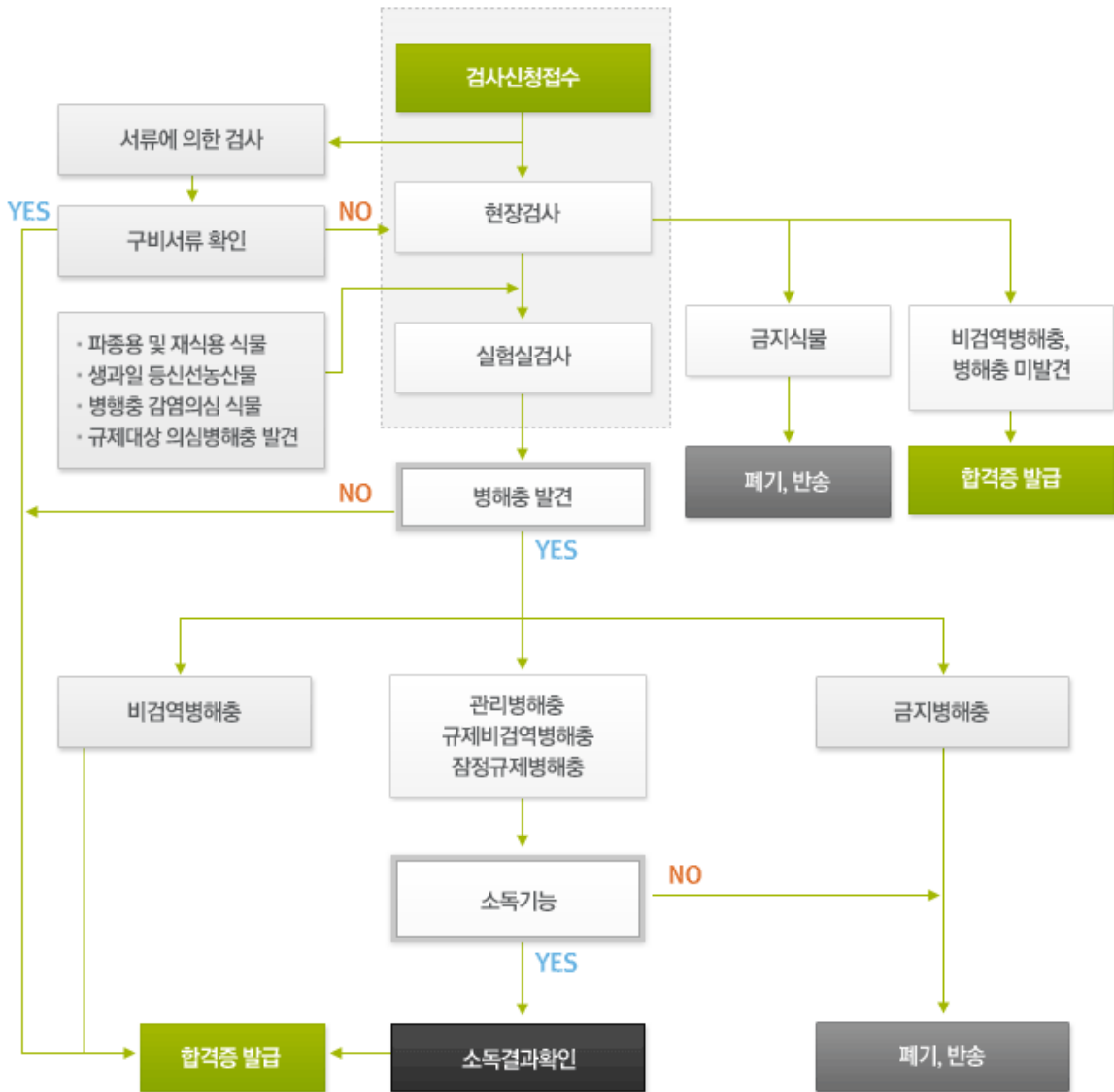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개념 및 종류	
규제병해충	<p>검역병해충</p>	<p>잠재적으로 큰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은 병해충 또는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이 있음</p> <p>-금지병해충</p> <p>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그 병해충이 붙어 있는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다음의 병해충</p> <p>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병해충</p> <p>②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위의 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p> <p>※ 금지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금지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관리병해충</p> <p>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등의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p> <p>※ 관리 병해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병해충 정보-관리 병해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p>
	<p>규제비검역병해충</p>	<p>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으로서 국내에 분포하는 병해충으로서 벼, 밀, 콩 등 종자별로 「규제병해충」에 따른 병해충</p>
<p>잠정규제병해충</p>	<p>수입검역 과정에서 처음 발견되었거나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 중인 병해충으로서 규제병해충에 준하여 잠정적으로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는 병해충</p>	

3.1.2. 검역절차

수입검역 절차

<식물 수입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입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 을 수입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 해야 합니다 (「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별지 제4호서식) .

검역조사

수입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판정

검역합격증명서의 발급 등

식물검역관은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별지 제16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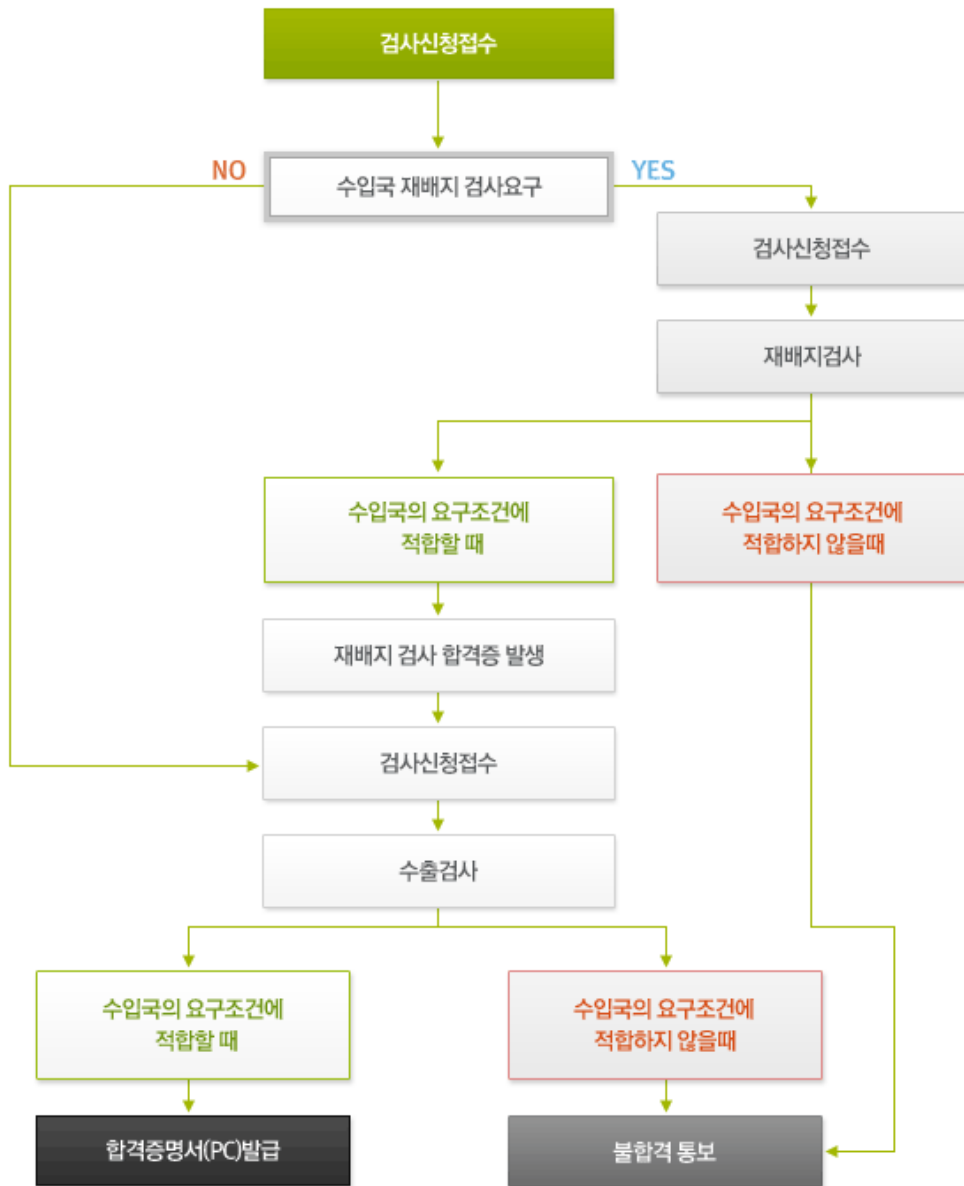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의2제1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식물검역관은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또는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수출검역 절차

<식물 수출검역 절차도>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식물검역-수출식물 검역절차>

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제37조의2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검역조사

수출검역 방법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및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 정밀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이 수출검역에 합격한 경우 수출식물 검역증명서인 PHYTOSANITARY CERTIFICATE,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 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제28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3서식).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3.1.3. 검역장소

수입검역장소

지정 검역장소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입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다음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입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함)하거나 해상으로 운송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보세운송된 도착지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검역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된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병해충의 위험성 및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보세운송된 도착지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3항).

운송수단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해당 수출국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관 또는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 소속된 직원은 수출국에서 수입할 식물과 그 식물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에 대한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제1항).

수출국이 그 국가의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기 위해 그 국가에서 수출 전에 검역을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규제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검역장소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및 그 외의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나 검역장소 또는 운송수단이 위치한 장소에서 수출검역을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본문).

재배지

다만, 검역대상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재배지 등에서 검역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검역관이 그 장소가 검역의 효율성 및 물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그 재배지 등에서 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9조 단서).

3.2. 수입검역

3.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 물건 등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품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 1).

1.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금지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나. 검역본부장이 정해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해충은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해충의 위험분석 및 수입검역요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위의 1. ~ 3. 물품 등의 용기·포장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입제한 물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제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식물에 대해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수출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국가로부터의 식물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5호).

수입항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은 항만·공항·기차역 등 다음의 장소 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9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1조).

「관세법」 제133조에 따른 개항 및 「관세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

통관역 또는 통관장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3호).

수입금지 예외

금지품의 수입허가

금지품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그 물건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제2항).

다음의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제1항(「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중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제7호는 제외함)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일 것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제공받을 연구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일 것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함)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금지품 수입허가 신청수량이 수입용도에 적정한 수량일 것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음의 계획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험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시험연구 및 안전관리계획서 ② 국제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전시 및 안전관리계획서 ③ 농업유전자원 확보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농업유전자원 확인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다음의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입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수입 금지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식물(종자를 금지한 것만 해당)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가 등록된 자일 것 - 해당 금지품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포장·가공하는 과정에서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殘滓物)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 해당 금지품을 수입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일 것
제출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품 수입허가신청서 - 전문인력, 시설·장비 현황 등 그 금지품의 관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종자업등록증, 가공·포장공정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 중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3항).

수입금지 물건 등에 대한 조치

폐기·반송 등

폐기·반송 등 조치명령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회수, 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하여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별지 제11호서식).

- √ 수입항 외의 장소를 통해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
- √ 수입된 금지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입된 것은 제외함)
- √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금지품
- √ 수입제한을 위반하여 수입된 식물 등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폐기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 √ 다음의 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 ① 우편·택송·이사물품 또는 휴대으로 또는 휴대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 ②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
- √ 폐기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폐기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폐기명령 또는 격리재배 검역을 할 수 없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7호).

폐기·반송 등 이행기간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반송 등의 조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 경유물품의 경우에는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 이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 별표 7).

날씨가 좋지 않아 해당 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단서).

폐기장소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한 폐기는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행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서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 √ 휴대, 우편 및 특급택송물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로 폐기하는 경우
- √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 √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 √ 격리재배 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 √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폐기·반송 등 확인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폐기·반송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 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데,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폐기·반송 등에 대한 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위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폐기·반송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12호서식).

3.2.2. 검역신청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화물수입 검역신청

식물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제8조제1항,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수입허가증명서(「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의 금지품인 경우만 첨부함)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다만, 다음의 경우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상운송 또는 항공운송을 하거나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는 경우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운송방법 등에 적합하게 해당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따른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은 상태로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입할 때에 다음의 경우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아도 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휴대하거나 우편·택송 또는 이사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5호, 2024. 2. 19. 발령·시행)에서 정하는 수량 이하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검역증명서 첨부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와 「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제한된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 제외함)

시험연구용 또는 국제박람회용이나 농업유전자원 확보 등의 목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아 금지품을 수입하는 경우(「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1호)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무환(無換)으로 수입하는 경우[재식용(栽植用)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

세관이 공매(公賣)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4-32호, 2024. 8. 5. 발령, 2024. 8.

찾기 쉬운 생활법령

11. 시행)에 따른 고열건조, 분쇄, 압착 또는 냉동의 방법으로 가공된 식물로서 밀폐 포장된 상태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한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입국에서 통관되지 못하고 반송되어 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용 식물을 밀폐 포장된 상태로 반입해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역장소에서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보관하는 경우

수출국과 합의한 식물검역 증명방법에 관해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

전쟁, 내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벌칙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한 경우 제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및 제48조의3).

과태료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보세운송한 경우 1회 위반 시 200만원, 2회 위반 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1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의 수입신고를 지체한 경우	10	30	90
특급탁송화물·이사화물을 제외한 모든 수입화물에 대한 검역신청을 지체한 경우	100	200	300

휴대수입 검역신청

휴대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대한민국세관신고서, 이사물품반입내역서를 제출하거나 구술하는 것으로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단서).

과태료

판매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으로 휴대하여 수입하거나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상검역 검역신청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다고 인정하는 등 다음의 경우에는 통관(通關)에 앞서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 안에 들어가서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본문).

전용 선박으로 곡류, 박류(粕類: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 코프라 또는 타피오카를 수입하는 경우(곡분, 펠릿, 큐브 및 거 포함)

전용 선박으로 목재류 또는 죽재류를 수입하는 경우

그 밖에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규제병해충이 있다고 의심되고 그 규제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편물검역 검역신청

통관 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우편물을 접수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알려야 하고, 식물검역관은 우체국장의 통지를 받으면 해당 우편물을 검역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7항 및 제8항).

위의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9항).

과태료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2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3항제4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목재포장재의 신고

식물검역관은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해당하는지 보세창고 또는 컨테이너 야적장 등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1항, 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8조의3제2항).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목재포장재를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인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했는지 여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했는지 여부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 위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 위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하려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가 해당 도착지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목재포장재 신고서](#)를 그 도착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의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1항 및 별지 제6호의2서식).

과태료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를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선박검사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을 하는 경우 또는 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식물검역인증원-AGM광장-AGM 개요-선박검사수수료 규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2.3. 검역조사

검역방법

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 (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 별표 3).

구분	식물의 종류	검역 수량
	감귤류·사과·배·호도·포도 등의 온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	전량

<p>아보카도·양다래·파인애플·망고 등의 열대·아열대 과수류 식물과 그 부분</p>	<p>주수(株數)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p> <p>1,000주 미만: 50% 이상(최대 500주 미만)</p> <p>1,000주~2,000주 미만: 500주</p> <p>2,000주~5,000주 미만: 750주</p> <p>5,000주 이상: 1,000주</p> <p>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삼수(꺾꽂이순)·접수(접순)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p> <p>10kg미만: 50% 이상(최대 5kg 미만)</p> <p>10kg~20kg 미만: 5kg</p> <p>20kg~50kg 미만: 7.5kg</p> <p>50kg 이상: 10kg</p>
--	---

재식용	<p>카네이션·국화·장미·선인장·소철·야자·라일락·드라세나 등 화훼류의 식물과 그 부분, 소나무·낙엽송 등의 삼림식물, 제1호·제2호에서 규정한 것 외의 식물</p>	<p>주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p> <p>2,000주 미만: 30% 이상(최대 600주 미만)</p> <p>2,000주~1만 주 미만: 600주</p> <p>1만 주~5만 주 미만: 900주</p> <p>5만 주 이상: 1,200주</p> <p>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삼수(꿨꽃이순)·접수(접순) 등 식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만 해당함)</p> <p>200kg 미만: 30% 이상(최대 60kg 미만)</p> <p>200kg~1톤 미만: 60kg</p> <p>1톤~5톤 미만: 90kg</p> <p>5톤 이상: 120kg</p>
	<p>고구마의 덩이뿌리와 감자의 덩이줄기</p>	<p>1톤 미만: 50% 이상(최대 500kg 미만)</p> <p>1톤~20톤미만 : 500kg</p> <p>20톤 이상: 750kg</p>

<p>백합·튤립·수선·히아신스·글라디올러스 등 화훼의 구근류 (알뿌리류)</p>	<p>개수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p> <p>5,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1,000개 미만)</p> <p>5,000개~5만 개 미만: 1,000개</p> <p>5만 개~10만 개 미만: 1,250개</p> <p>10만 개 이상: 1,500개</p> <p>중량 단위로 수입하는 경우 [자구(子球, 새끼 알뿌리)만 해당함]</p> <p>100kg 미만: 20% 이상(최대 20kg 미만)</p> <p>0.1톤~1톤 미만: 20kg</p> <p>1톤~20톤: 25kg</p> <p>20톤 이상: 30kg</p>
<p>마늘·생강 등 채소의 구근류</p>	<p>20톤 미만: 5% 이상(최대 1,000kg 미만)</p> <p>20톤 ~ 100톤 미만: 1,000kg</p> <p>100톤 ~ 500톤 미만: 1,200kg</p> <p>500톤 이상: 1,400kg</p>
<p>용기에 봉입된 버섯종균·조식배양 식물과 그 부분</p>	<p>500개 미만: 3% 이상(최대 15개 미만)</p> <p>500개~1,000개 미만: 15개</p> <p>1,000개~5,000개 미만: 30개</p> <p>5,000개 이상: 45개</p>

찾기 쉬운 생활법령

	<p>벼·보리·옥수수·조·수수·콩·팥·완두콩 등 곡류 종자</p>	<p>0.1톤 미만: 20% 이상(최대 20kg 미만)</p> <p>0.1톤~5톤 미만: 20kg</p> <p>5톤~50톤 미만: 30kg</p> <p>50톤 이상: 40kg</p>
	<p>곡류 종자 외의 채소·화초·수목류·목초류 등의 종자</p>	<p>0.1톤 미만: 10% 이상(최대 10kg 미만)</p> <p>0.1톤~5톤 미만: 10kg</p> <p>5톤~50톤 미만: 15kg</p> <p>50톤 이상: 20kg</p>
비재식용	<p>건조되지 않은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折枝)</p>	<p>3,000개 미만: 20% 이상(최대 600개 미만)</p> <p>3,000개~15,000개 미만: 600개</p> <p>15,000개~3만개 미만: 900개</p> <p>30,000개 이상: 1,200개</p>
	<p>밀·콩·녹두·동부·땅콩·아주까리·아마인·코푸라·벼·보리·수수·조·옥수수 등으로서 유료·양조·제분·비료·사료·식량에 쓰이는 식물</p>	<p>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p> <p>20톤~500톤 미만: 100kg</p> <p>500톤~2,000톤 미만: 150kg</p> <p>2,000톤~1만 톤 미만: 200kg</p> <p>1만 톤~2만 톤 미만: 250kg</p> <p>2만 톤 이상: 300kg</p>
	<p>아마·삼·아바카 등의 조성유, 짚·가마니·새끼 등의 짚제품, 후추·커피원두·코코아원두 등의 향신료 또는 기호품의 원료, 한약재, 건조과실, 건조채소, 냉동과실, 냉동채소, 건조된 화훼류의 절화 및 절지 그 밖의 잡화류</p>	<p>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p> <p>20톤~100톤 미만: 100kg</p> <p>100톤~500톤 미만: 150kg</p> <p>500톤 이상: 200kg</p>

찾기 쉬운 생활법령

생과실, 생채소의 열매·잎·뿌리, 감자, 고구마, 마	20톤 미만: 2% 이상(최대 400kg 미만) 20톤~100톤 미만: 400kg 100톤~500톤 미만: 500kg 500톤 이상: 600kg
목재·죽재	종류별로 2%
우드칩·톱밥	20톤 미만: 0.5% 이상(최대 100kg 미만) 20톤~500톤 미만: 100kg 500톤~2,000톤 미만: 150kg 2,000톤~1만 톤 미만: 200kg 1만 톤~2만 톤 미만: 250kg 2만 톤 이상: 300kg
수입되는 금지품	전량
수입되는 병해충 전염우려물품	종류별로 2%

※ 현장검역의 품목별 검역 수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3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격리재배검역

격리재배 검역대상

식물검역관은 씨앗·묘목·알뿌리 등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에 대하여 수입검역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의 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역하거나 그 식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 √ 과수류 및 유실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중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 양딸기 묘(苗)
- √ 벚나무·장미나무속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다음의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은 격리재배 검역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 수입하여 재배되지 않고 그대로 수출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찾기 쉬운 생활법령

- √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규제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 격리재배를 하지 않기로 수출국의 정부기관과 약정을 맺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 감자의 덩이줄기 및 고구마의 덩이뿌리 및 양딸기 묘 등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로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그 식물의 재배지에서 검역을 하고 그 검역 결과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검역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한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 √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재배되지 않고 보관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보관 중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재배하려면 재배 전에 격리재배 검역을 받아야 함)

격리재배 명령

식물검역관은 격리재배 대상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 대상임을 알린 후 격리재배 장소가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격리재배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

격리재배 기간 등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격리재배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제14조).

격리재배 대상식물	격리재배기간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양딸기묘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벚나무·과수류 등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1년 이내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2년 이내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검역횟수 및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격리재배검역요령」 제16조제1항).

구분	대상식물	검역횟수	검역시기
국가포장	전체	2회	1차 : 생육중기 2차 : 생육최성기
지정포장	포장검역	1회	생육최성기
	양딸기묘	2회	1차: 초장 15cm 정도 2차: 생육최성기
	감자의 덩이줄기, 고구마의 덩이뿌리	2회	1차: 생육중기 2차: 생육최성기
	벚나무·과수류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및 허가받은 수입금지식물, 장미의 묘목·접수(접순) 및 삽수(꺾꽂이순)	2회	1차: 생육중기 2차: 생육최성기

과태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1항제2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회	2회	3회 이상
격리재배 식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날짜까지 격리재배지(보관장소를 포함함)로 이동시키지 않은 경우	25	50	100
격리재배시설 보안 등 격리재배명령과 관련된 식물검역관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	200	400

※ 격리재배의 검사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격리재배검역요령](#)」>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신고방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통관, 운송, 보관 등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1항·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의2).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는 자

선사, 관세사, 보세사, 창고업자, 운송업자, 식물검역대행자

컨테이너 소유자, 컨테이너 하역업자, 컨테이너 수리업자, 컨테이너 청소업자

위반 시 제재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식물검역관의 확인 및 조치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9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찾기 쉬운 생활법령

3.2.4.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화물수입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식물검역대상물품”이라 함)의 수입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입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식물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별지 제16호서식).

휴대수입검역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수입하는 사람의 요청하는 경우 검역합격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이는 [합격증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별지 제17호서식).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하여 선상검역을 한 경우 [선상검역 결과증명서](#)를 그 수입하는 사람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서식).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화물수입검역

식물검역관은 화물수입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되었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6호).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하는 경우에는 회수·[소독, 폐기, 반송, 반출, 기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별지 제11호서식).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반출 또는 반출 명령의 이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본문 및 별표 7).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이행기간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 (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감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하역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경유물품	위의 경유물품	소독명령일로부터 5일
폐기·반송 및 반출		·명령일로부터 20일 ·경유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0일

식물검역관은 소독 및 폐기 장소는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본문 및 별표 8) .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요건
소독 장소	1.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검역한 장소 2. 소독시설이 갖추어진 장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이 지정하는 장소 ① 소독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 방지 등 긴급한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그 밖에 1. 및 2.의 장소에서 소독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폐기 장소	1. 폐기물 처리시설 2.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폐기시설에 처리하기에 부적합한 다음의 경우는 그렇지 않음 ① 휴대, 우편 및 탁송품으로 반입된 소량의 폐기처분 대상물품과 격리재배대상식물 중 국가포장 검사에서 불합격된 물품을 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하거나 분쇄기, 전자레인지, 고압멸균기 등으로 폐기하는 경우 ② 고철 등을 수입하여 흙 또는 그 밖의 잔재물을 처리하는 경우 ③ 퇴비로 가공하여 제품화하는 경우 ④ 격리재배중인 식물에서 규제병해충이 검출되어 매몰하는 경우 ⑤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폐기하는 경우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 명령을 하는 경우 그 명령의 이행결과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 본문).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대상물품 및 목재포장재가 소독·폐기·반송 또는 반출된 경우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처분에 대한 증명서를 요구하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처분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7조 및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화물수입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식물검역관은 우편물검역을 받지 않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경우 수입검역을

찾기 쉬운 생활법령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1항제7호).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휴대수입 또는 우편물로 수입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선상검역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3항).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장소, 확인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8, 별지 제11호의2서식).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출한 전량 소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규제병해충을 완전히 죽여 없앨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식물검역관은 선상검역을 생략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소독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6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 단서).

목재포장재의 경우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의 검사를 한 결과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에서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소독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소독·폐기 등의 명령서 발급, 이행기간 및 처분증명서 발급 등에 대한 내용은 화물수입검역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제24조 본문, 제25조 본문, 제26조, 제27조 및 별표 7, 8 별지 제12호서식).

목재포장재의 소독은 열처리 또는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방법으로 하며, 폐기는 소각, 매몰(1미터 이상의 깊이로 파야하며, 흰개미나 선충 또는 뿌리병원균이 검출된 목재포장재는 제외함), 가공처리 및 분쇄 그 밖에 검역본부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제4항 및 제5항).

식물검역관은 목재포장재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목재포장재를 수입하는 사람에게 폐기를 명해야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수입되는 물품의 목재포장재가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수출국 식물보호기관이 승인한 시설에서 「국제식물보호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목재포장재를 열처리,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처리 등의 방법으로 소독처리를 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소독처리를 했는지 여부

「국제식물보호협약」에 따른 심볼, 국가 코드, 생산자 또는 소독처리업체 코드 및 소독처리 코드에 따른 마크를 표시하지 않거나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마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

다음의 수입요건에 부합하지 않는지 여부

- √ 위의 소독처리 기준에 따라 소독처리할 것
- √ 위의 소독처리 마크 표시기준에 따라 마크를 표시할 것
- √ 목재포장재의 나무껍질을 제거할 것

격리재배검역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리재배대상식물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회수(1.의 경우에만 해당)·폐기·반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2조).

1.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한 식물(유통 중인 것을 포함, 다음의 경우의 식물은 제외)

- √ 홍수, 태풍 등 재해발생으로 격리재배시설이 파손되거나 토지가 유실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격리재배지가 아닌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
-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시설 보완 등에 대한 식물검역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 √ 재해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격리재배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을 지정된 날까지 격리재배지로 옮기지 못한 경우

2. 꼬리표가 부착되지 않았거나 꼬리표 부착 방법을 위반한 식물(식물검역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이 지나기 전까지 정정·보완한 경우의 식물은 제외)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스스로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6조제4항, 제5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5조, 별표 8).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으로서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고 그 소유자나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위의 이행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3.3. 수출검역

3.3.1. 검역신청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신청절차

식물 등의 수출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을 수출하려는 경우 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본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25호서식).

수출식물 검역신청서

수입허가서(수입국이 수입허가서를 발행하는 경우만 첨부함)

수출국이 발행하는 식물검역증명서(재수출하는 경우만 첨부하며, 신청인이 되돌려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확인 후 되돌려 줄 수 있음)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수입국의 요구 사항(수입국이 식물검역증명서에 추가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만 첨부함)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정한 식물을 수출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식물검역관을 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의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

벌칙

수출검역에 합격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에 합격하여 수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 및 제48조의3).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한 수출검역신청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 등의 수출검역을 요청하려는 경우 수출식물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1항, 별지 제25호서식).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아닌 물품 등에 대해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을 요청하려는 경우 기항지 목록과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신청서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나 국제식물검역인증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2항, 별지 제27호의2서식).

선박검사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은 선박 등 운송수단 검역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2제1항).

※ 검역대상별 수수료율은 이 콘텐츠 < 식물검역 수입검역 검역신청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국제식물검역인증원-AGM광장-AGM 개요-선박검사수수료 규정 >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2. 검역조사

검역방법

수출 식물 등의 검역에 관하여는 수입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본문).

검역방법의 종류

식물 등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의 수출검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물방역법」 제1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제36조제1항 본문).

서류에 의한 검역

현장검역(탐지동물이나 검색시설·장비를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

실험실정밀검역

격리재배검역

다만, 수입국과 합의를 한 경우나 수입국이 요구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검역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 단서).

3.3.3.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식물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또는 [PHYTOSANITARY CERTIFICATE FOR RE-EXPORT](#)를 신청인에게 발급·전송하거나 [합격증인](#)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식물 등이 아닌 물품 등의 검역증명서 발급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아닌 물품이나 선박 등 운송수단의 수출검역을 한 결과 합격한 경우에는 [Certificate of Inspection of Freedom from Asian Gypsy Moth in Korea](#) 또는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의2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제3항, 별지 제27호의3서식).

위반 시 제재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검역증명서 또는 수출검역에 합격하였다는 표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사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8호의2 및 제48조의3).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찾기 쉬운 생활법령

검역 불합격의 통보

식물검역관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이 수출검역에 불합격한 경우 검역이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말로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8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

3.4. 국내 지역 경유 검역

3.4.1. 국내 지역 경유 시 검역신청 등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국내 지역을 경유하기 위한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이하 “경유물품”이라 함)은 수입항 간에만 운송할 수 있으며, 그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경유 출발지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부터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

벌칙

국내 지역 경유의 승인을 받지 않고 외국의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운송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8호).

국내 지역 경유 승인 절차

경유물품의 경유 승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출발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0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서

화물 목록(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 등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함)

식물검역관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의 사항을 검사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밀폐형 컨테이너나 용기에 넣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문이 봉인되어 있는지의 여부

컨테이너 또는 차량의 통기구의 지름을 1.6밀리미터 이하로 하거나 그 지름이 1.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6밀리미터 이하인 망으로 완전히 덮었는지의 여부

운송차량의 외부에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는지의 여부

찾기 쉬운 생활법령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검사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고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지 않으면 신청인에게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경유물품은 위의 국내 지역 경유 승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되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1조 본문).

사고발생 및 도착 신고

사고발생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재해나 차량사고 등으로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그 경유를 승인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1항).

경유물품의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하면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고 발생 지점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즉시 다음의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2조제2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2조).

- √ 문제 발생 일시 및 장소
- √ 경유 승인번호
- √ 경유물품의 품명 및 수량
- √ 문제 발생 내용

벌금

- √ 안전조치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9호).

도착 신고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이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경유물품 도착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지역을 경유하려는 물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과 경유 승인 대상 물품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5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별지 제19호·제23호서식).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도착 신고를 받은 경유물품에 대해 경유물품 도착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3항 및 별지 제24호서식).

과태료

- √ 경유물품의 도착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7조, 별표 2).

경유물품의 검사

식물검역관은 경유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될 때까지 그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는지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6조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

벌금

식물검역관의 경유물품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8조제6호).

유출 금지

국내 지역 경유 승인을 받은 경우 그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24조).

벌칙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6조의2제2호).

규제병해충 발견 신고

국내 지역 경유 물품에서 규제병해충이 발견된 경우의 신고방법

외국으로부터 컨테이너 등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을 국내 지역을 거쳐 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소유자나 그 대리인은 해당 물품의 취급·관리 과정에서 개미류, 딱정벌레류 등 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병해충으로 의심되는 벌레 등을 발견한 경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서 발견된 규제병해충에 대해 발견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식물방역법」 제50조제2항제2호의2).

신고를 받은 식물검역기관의 식물검역관은 신속히 현장 확인 및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3항).

식물검역관은 확인 및 정밀검사 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병해충이 퍼지지 않도록 그 물품 및 보관장소 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의2제4항).

식물검역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규제병해충이나 잠정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전부 또는 검사 단위별로 소독해야하고, 소독처리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의3).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국내 지역 경유 승인 거부

식물검역관은 국내 지역 경유 검역 결과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운송차량의 외부에서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발견되어 경유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 검사가 끝난 후 2일 이내에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

소독·폐기 등 명령 등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다음과 같이 경유물품을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

찾기 쉬운 생활법령

명령을 받는 경우	조치사항
경유물품이 경유기간에 경유 목적지인 수입항에 도착하지 못한 경우	경유물품의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조사 결과 규제병해충 또는 잠정규제병해충이 퍼지거나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유물품을 운송하는 차량별로 긴급방제조치
경유물품을 유출한 경우	유출된 경유물품 전부를 회수하여 폐기
검역 결과 경유물품에 대한 안전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경유물품 전부를 폐기·반송 또는 반출

식물검역관은 다음의 경우 스스로 경유물품을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을 그 소유자나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27조제2항, 제3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4조, 별표 7).

소독·폐기 등 명령을 받은 소유자나 대리인이 이행기간까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분		이행기간
곡류·건조된 식물 및 생식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0일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사일로(사료용 및 가공용 곡물 등을 저장하는 탱크형 저장시설)·창고 또는 야적장에서 소독하는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12일
	전용 선박 외의 방법으로 수입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목재류 및 죽재류	전용 선박으로 수입하여 선박에서 소독하는 경우	갑판 적재분 하역완료 예정일로부터 5일
	야적장·창고 및 컨테이너에서 소독하는 경우	·선박에서 적재된 경우: 하역완료 예정일부터 12일 ·하역된 경우: 소독명령일로부터 12일
경유물품	위의 경유물품	소독명령일로부터 5일
폐기·반송 및 반출		·명령일로부터 20일 ·경유품의 경우: 명령일로부터 10일

소유자나 대리인이 분명하지 않거나 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독·폐기 등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

벌금

경유물품의 소독·폐기·반송·반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10호).

식물검역관의 소독 또는 폐기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벌금에 처해집니다 (「식물방역법」 제48조제7호) .

4. 수산물검역

4.1. 수산물검역 개요

4.1.1.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및 질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

지정검역물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이 되는 물건은 다음의 수산생물 또는 물건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이식용 수산생물

- √ “수산동물”이란 살아 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연체동물(軟體動物) 중 두족류, 극피동물(棘皮動物) 중 성게류, 해삼류, 척색동물(脊索動物) 중 미색류(尾索類), 갯지렁이류·개불류·양서류·자라류·고래류 및 그 정액(精液) 또는 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수산식물”이란 살아 있는 해조류,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과 그 포자(孢子)를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수산동물 중 어류·패류·갑각류·양서류

열처리 및 절단 등의 가공을 하지 않고 냉동·냉장한 전복류, 굴 및 새우류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하는 수산생물 또는 물건[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포함한 진단액류(診斷液類)가 들어있는 물건을 포함함]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

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의 수출입 검역 대상 질병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수산동물전염병과 수산식물전염병이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

수산동물전염병

“수산동물전염병”이란 노랑머리병, 잉어봄바이러스병,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 바이러스성출혈성폐혈증, 유행성궤양증후군, 타우라증후군, 흰반점병과 그 밖에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으로서 다음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6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 √ 어류의 유행성조혈기괴사증, 전염성연어빈혈증, 자이로닥틸루스증(자이로닥틸루스살라리스만 해당함), 연어알파바이러스감염증,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
- √ 패류의 보나미아감염증(보나미아오스트레, 보나미아익시티오사에만 해당함), 마르테일리아감염증(마르테일리아레프리즈스만 해당함), 퍼킨수스감염증(퍼킨수스마리누스만 해당함),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제노할리오티스캘리포니아바이러스감염증, 전복허피스바이러스감염병

- √ 갑각류의 가재전염병, 전염성피하및조혈기괴사증, 전염성근괴사증, 흰꼬리병, 괴사성간체장염, 급성간체장괴사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 √ 양서류의 양서류항아리곰팡이병, 도롱뇽항아리곰팡이병, 라나바이러스병
- √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
수산식물전염병

“수산식물전염병”이란 전염속도가 빠르고 대량폐사를 일으켜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식물질병을 말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7호).

4.1.2. 검역절차

수입검역 절차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검역신청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입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입국하는 즉시 해당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고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검역조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입검역을 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2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등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수산생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외 물건의 수입검역을 한 경우 신청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합니다.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재검역

수입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수출검역 절차

검역신청

수입국에서 검역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수출검역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을 수출하는 경우 신청을 하여 수출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2항).

검역조사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상대국의 정부기관 또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를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3항).

등록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4항).

- ※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제1항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검역판정

검역증명서의 발급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산물검역관이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에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불합격품 등의 처분

수산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실시하는 중에 다음과 같은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한 때에는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을 하도록 명하고 검역 대상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검역 결과를 통보합니다. 다만 화주가 그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수산물검역관이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
- √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 √ 다른 물질의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재검역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해 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

4.1.3. 검역장소

검역시행장

지정된 검역시행장

수산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과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은 수산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실시해야 합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본문).

벌칙

검역시행장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는 수산물을 검역시행장이 아닌 장소로 운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54조제10호).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

검역시행장 외의 검역장소에서 검역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수산물검역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검역시행장에서도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32조제1항 단서).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의 대상물건을 수산물검역기관의 검역시행장에서 검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 수출검역의 대상물건이 시설·장비 등 필요한 검역조건이 갖추어진 수산생물양식시설 또는 수산생물집합시설 안에 있는 경우

그 밖에 국내의 방역상황 등에 비추어 해당 검역의 대상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

검역장소의 지정대상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육상수조(陸上水曹) 보관시설

육상수조[축제식(築堤式) 포함] 양식시설

수족관 시설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창고시설

해상가두리 양식시설(다음의 지정검역물을 검역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해상가두리 양식시설을 지정하려면 위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함)

√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이식용 지정검역물로서 고도회유성어종(高度回遊性魚種)

√ 파견검역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4.2. 수입검역

4.2.1. 수입금지 물건 및 예외 등

수입금지 물건

수입금지 물건

다음의 물건은 수입해서는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를 제외함)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생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생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

수입금지 물건을 수입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2호).

수입금지 예외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입금지 물건의 수입허가

시험·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와 예방을 위한 의약품의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수산생물 또는 물건은 수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

수입을 허가하는 때에는 수입방법과 수입된 지정검역물 또는 수산생물의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2항).

수입금지 물건에 대한 조치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다음의 경우 그 화주(貨主)(대리인을 포함함)에게 반송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방역에 지장이 있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수입 금지된 물건 등의 처리방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3-46호, 2023. 2. 28. 발령·시행)에 따른 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매몰 등”이라 함)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1항).

√ 수입이 금지된 물건인 경우

√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지정검역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질병의 방역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이 경우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수산생물검역관은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화주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여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검역물을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3항).

수산생물검역관의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3호).

소각·매몰 등 이행기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을 받은 화주는 그 지정검역물을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하며,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가 15일 이내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이 직접 소각·매몰 등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본문).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의 이행기간을 1회에 한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단서).

수입금지 물건의 이동금지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면 안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5항).

수산생물검역관의 지시 없이 반송하거나 소각·매몰 등을 해야 할 지정검역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한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4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제6항 단서).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의 수량이 적은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4.2.2. 검역신청

종류별 검역신청절차

수입검역신청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출국에 소재하는 지정검역물 양식·가공 또는 보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수입검역을 신청하기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된 날부터 2년으로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6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검역을 신청하고, 수산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본문, 별지 제15호서식).

수입검역신청서

지정검역물 적하목록 사본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에는 제외함)

수입허가증명서 원본(수입금지 지정검역물을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파견검역증명서 원본(파견검역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만 첨부함)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시험·연구조사 계획서(「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만 해당함)

반송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외국 박람회 참가 후 재반입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벌칙

이를 위반하여 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6호).

휴대검역물 신고

수산생물 중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하 “휴대검역물”이라 함)에 관한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다음의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별지 제17호서식).

수입수산생물 휴대물품 검역신고서에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검역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관세청장이 정하는 여행휴대품 신고서에 휴대검역물에 관한 사항을 적어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함

휴대검역물의 종류 및 수량을 출입 공항·항만 등을 관할하는 수산생물검역관에게 구두로 신고함

과태료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공항·항만에 있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때에는 1회 위반 시 10만원, 2회 위반 시 50만원 및 3회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20조, 별표 5).

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 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4.2.3. 검역조사

검역방법 등

검역의 종류, 대상 및 방법

수산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의 수입검역의 종류, 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7조, 「수산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

구분	검역대상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o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허가를 받은 지정검역물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못하고 반송되는 지정검역물(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거나 「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함) 박람회 참가로 수입국에서 일정기간 전시 후 국내에 반입되는 지정검역물 	

<p>임상검사 (검역물의 유통·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지 않은 지정검역물 2.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의2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이 되는 지정검역물<삭제> 4. 시험·연구조사용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 (연구시설을 구비한 국가기관, 대학 및 병원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5. 여행자가 신고한 휴대 지정검역물 6. 파견검역증명서를 첨부한 지정검역물 7. 정밀검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정검역 8. 수입국에서 정밀검사를 요구하지 않는 지정검역물 (수출검역만 해당)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통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증상 √ 체색, 체형, 복부, 아가미, 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증상 (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최초로 수입하는 수출국·품종 (학명)·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서류검사 대상 지정검역물은 제외함) 2. 이식용으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3. 임상검사 결과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지정검역물 4.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수입검역 신청횟수를 기준으로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국·동일품종 (학명)·동일 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 5. 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기항에 따라 수입금지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 6. 수산생물 검역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찾기 쉬운 생활법령

<p>정밀검사</p> <p>[병리조직학· 분자생물학· 혈청학· 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포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수출한 수산생물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었다는 수입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반송하는 지정검역물 8.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지정검역물 중 최근 2년간 연 10회 이상 정밀검사 결과 불합격 발생이 없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공고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지정검역물 9. 수산생물전염병의 대상인 지정검역물 10. 정밀검사 결과 최근 2년간 불합격 처분을 받은 후 같은 수출국·품명(학명)·수입업체에서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11. 이식용 지정검역물 중 유독·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정검역물 12. 수출국에서 전염병 발생으로 긴급히 검역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정검역물 13. 수출국가와 검역증명서가 협의되어 수입되는 지정검역물 중 신규 질병 등으로 일부 수산생물전염병 항목에 대해서는 협의되지 않은 지정검역물 14. 검역을 신청하여 정밀검사로 분류된 후 신청인이 이 건을 취하하고 다시 검역을 신청한 지정검역물 15. 수산생물전염병 대상 중 파견검역을 신청한 지정검역물 16. 식용으로 수입한 지정검역물 중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기준에 따른 이식용 수산생물이 5퍼센트 이상 혼재된 지정검역물 17. 수입국에서 특정질병에 대한 무병증명을 요구하는 지정검역물(수출검역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번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매건 정밀검사 · 8~11번까지에 해당하는 항목은 무작위정밀검사 대상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진단지침서에 따름 <p>[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p>
---	--	--

4.2.4.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 및 휴대검역물의 수입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휴대검역물의 수입검역의 결과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의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본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별표 4, 별지 제16호서식).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의 경우: 수입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함)

휴대검역물 수입검역의 경우: 수입검역 결과표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입검역

수산생물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을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수입검역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0조 단서).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와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다만,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의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4.2.5. 파견검역

파견검역

찾기 쉬운 생활법령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 수산생물의 검역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해당 국가에 보내어 검역(이하 “파견검역”이라 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수산생물을 국내에 수입하려는 경우 그 수산생물을 수입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수산생물의 수출국가 정부가 그 수산생물을 수출하기 전에 수출국가에서 검역할 것을 요청하는 때

파견검역 신청

파견검역을 신청하려는 경우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

파견검역신청서

파견검역 신청사유서 및 지정검역물 반입계획서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동물물 수입하는 경우에만 첨부함)

수산생물검역관이 수출국가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아 검역업무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의 제공 확인서(국내반입 후 정밀검사를 받기로 한 경우에는 제외함)

지정검역물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양식시설을 포함)의 시설 현황 및 위치도

지정검역물 통제기능 및 보고 체제 유지 등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서약서

검역수수료

파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 √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 √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 √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 √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파견검역 실시

파견검역 요청을 받은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함)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동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의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제3항).

수출국가 정부기관에서 시설 및 장비 등을 제공받아 검역

수산동물검역관이 파견국가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국내에 보내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밀검사

검역증명서 발급

수산동물검역관은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4항 및 별지 제19호서식).

수입검역 면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면 수산생물검역관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3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파견검역 비용 부담

파견검역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자 또는 파견검역을 요청한 해당 국가의 정부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8조제2항).

4.3. 수출검역

4.3.1. 검역신청

검역신청절차

수출검역신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전단, 제2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별지 제20호서식).

수출검역신청서

이식승인서 사본(「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승인을 받은 수산생물을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검량기관이 발행한 중량 확인서(지정검역물의 특성상 검역시행장에서 중량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만 해당함)

검역수수료

검역대상별 수수료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 납부방법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검역수수료 반환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4.3.2. 검역조사

검역방법 등

검역의 종류 및 방법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 지정검역물" 이라 함)의 수출검역의 종류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 제2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4-3호, 2024. 7. 4. 발령·시행) 제6조, 제7조, 별표 2 및 별표 3).

구분	검역방법
서류검사	신청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임상검사	검역물의 유영·행동, 외부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1. 유영 및 행동의 정상 여부 2. 외부증상 √ 체색, 체형, 복부, 아가미, 안구·체표 등의 정상여부 3. 해부학적 증상(수산생물검역관이 위의 검사를 통해 이상 징후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복강, 장기 등의 이상 유무
정밀검사	병리조직학·분자생물학·혈청학·생화학·물리화학 및 미생물학적 분석방법 등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와 임상검사를 포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따름 [수산생물질병 진단지침서에 없는 경우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생물 진단 매뉴얼이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인시험방법을 따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 또는 그 생산물을 양식·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상대국으로부터 해당 시설이 상대국과의 협약의 내용이나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산생물질병 관리기준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의 확인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가공·보관된 지정검역물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31조제4항).

지정검역물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이 별도의 검역기준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기준에 따라 검역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지정검역물의 검역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단서).

4.3.3. 검역판정

검역증명서 교부

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의 수출검역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산생물 중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함)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에서 그 물건이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출검역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함)를 발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검역 불합격품 등의 처분

소각·매몰 등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

수산생물검역관은 수출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검역 대상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화주에게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 위생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들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나 그 밖의 사유로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반송 또는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소각·매몰 등 비용부담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으로 처리되는 지정검역물에 대한 보관료 및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화주가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다음의 경우 소각·매몰 등 조치명령에 따른 반송, 소각·매몰 등 또는 운반 등에 드는 각종 비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국고에서 부담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

- √ 해당 지정검역물의 화주가 분명하지 않거나 있는 곳을 알 수 없는 경우
- √ 수입 물건이 소량인 경우로서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하는 경우

4.4. 재검역

4.4.1. 재검역 등

재검역

재검역을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 한정하여 재검역을 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32호, 2013. 5. 6. 제정·시행)].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인정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한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초 검역한 수산생물검역관 외의 수산생물검역관이 검역하게 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후단).

재검역 신청

수입검역 및 수출검역의 실시결과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자에게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1항 전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2호,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및 「[검역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에 관한 고시](#)」).

수입재검역신청서 또는 수출재검역신청서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검역을 위한 시료채취 또는 검역방법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여 재검역을 신청하는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이 당초의 검역결과와 다른 검역결과를 제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재검역의 재검역

재검역의 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다시 재검역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5조제3항).

검역수수료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의 검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본문, 별표 6).

검역신청수수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구분	수수료	비고
세균성 질병, 곰팡이성 질병	15,000원	해당 항목 건별로 적용
기생충성 질병	10,000원	
바이러스성 질병	50,000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의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단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병성감정[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산생물을 부검 또는 그 밖의 생화학적 실험 등을 통하여 그 전염병의 원인을 규명하려는 병리진단학적 행위(「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조제8호)]을 의뢰하는 경우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의 준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자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1항·제2항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수출검역이나 수출검역에 대한 재검역을 받으려는 경우

※ 검역대상별 수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검역수수료의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다음의 경우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검역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지 제29호서식).

민원인의 과실 없이 신청내용의 오류 등으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민원인이 신청한 검역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취소한 경우

전산 시스템 장애로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보상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검역을 실시하여 합격한 수산생물(재검역을 위해 출하를 하지 못하여 피해가 발생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출하제한 등으로 발생한 피해의 평가액의 범위에 따른 보상금(검역시행장에서 검역관리인의 관리 부주의에 의한 폐사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급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2조제1항제6호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별표 3).

검역판정의 취소

검역판정의 취소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검역, 파견검역, 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검역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수입검역·파견검역·수출검역 또는 재검역을 실시해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6조).

5. 축산물검사

5.1. 축산물신고

5.1.1.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축산물

축산물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축산물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찾기 쉬운 생활법령

종류	내용
식육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의 지육(枝肉), 정육(精肉), 내장, 그 밖의 부분 ※ “가축”이란 소, 말,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함), 돼지(사육하는 멧돼지를 포함함), 닭, 오리, 그 밖에 식용(食用)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로서 사슴, 토끼, 칠면조, 거위, 메추리, 꿩 및 당나귀를 말함
포장육	판매(불특정다수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細切) 또는 분쇄(粉碎)를 포함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않은 것
원유(原乳)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처리·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착유(搾乳) 상태의 우유와 양유(羊乳)
식용란(食用卵)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닭·오리 및 메추리의 알
식육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그 밖에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분쇄가공육제품(식육을 주원료로 하여 세절(細切) 또는 분쇄하여 가공한 햄버거패티·미트볼·돈가스 등을 말함),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식육을 원료로 하여 물로 추출한 것 또는 이에 그 식육이나 식품·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 식용 우지(牛脂), 식용 돈지(豚脂) 및 식육간편조리세트(식육,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또는 분쇄가공육제품·갈비가공품·식육추출가공품·식용 우지·식용 돈지 제품을 주원료로 하고 손질된 농산물, 수산물 등을 함께 넣어 소비자가 가정에서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함)
유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우유류, 저지방우유류, 분유류, 조제유류(調製乳類),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그 밖에 원유 등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무지방우유류, 유당분해우유, 가공유류, 산양유, 버터유류, 농축유류, 유크림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 가수분해 식품, 아이스크림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냉동·경화한 것을 말함), 아이스크림분말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한 후 건조·분말화한 것으로서 물을 넣어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함) 및 아이스크림믹스류(원유 또는 유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후 살균 또는 멸균한 액체형태의 제품으로서 냉동시키면 아이스크림류가 되는 것을 말함)
알가공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 및 피단

5.1.2. 수입신고

수입신고 등

축산물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을 포함)를 하려는 경우(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를 첨부하여 축산물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찾기 쉬운 생활법령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수입신고 서류에 대해서는 이 콘텐츠 <[식품검사-식품등의 신고-수입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하는 경우 축산물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유용한 법령정보

Q. 판매를 위해 햄을 수입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햄을 수입하려는 경우 축산물 수입신고서 및 일정한 서류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신고된 햄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축산물

다음의 축산물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축산물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축산물

여행자가 휴대한 것·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축산물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축산물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축산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축산물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축산물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축산물

금지행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다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수입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축산물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또는 동시에 징역과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3호).

5.1.3. 수입금지

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1항).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를 한 뒤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단서).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3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5).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4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2제6항).

5.2. 축산물검사

5.2.1. 수입검사

수입검사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축산물(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이하 같음)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축산물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축산물의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를 포함)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함)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된 축산물은 제외)

※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 [식품검사-식품 등의 검사-수입검사](#)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축산물에 대한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다음의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제출 서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축산물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축산물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축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보관책임자

수입신고인은 위의 제출 서류 중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

조건부 신고대상 축산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축산물

최근 2년 이내에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축산물(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축산물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축산물

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축산물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검사 부적합 통보

부적합 통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축산물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축산물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축산물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축산물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

검사 불합격 처분 방법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폐기

6. 식품검사

6.1. 식품 등의 신고

6.1.1.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

식품 등

식품 등 중 수입신고 및 검사 대상 물건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

종류	내용
식품	모든 음식물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함)
식품첨가물	식품을 제조·가공·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감미(甘味), 착색(着色), 표백(漂白) 또는 산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식품에 사용되는 물질[기구(器具)·용기·포장을 살균·소독하는 데에 사용되어 간접적으로 식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물질 포함]
기구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함)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운반·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용기·포장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

6.1.2. 수입신고

수입신고

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 이하 같음)을 수입신고(수입신고 대행 포함)를 하려는 경우(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제18조제2항 본문 참조, 제20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25호 서식).

1.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찾기 쉬운 생활법령

3. 수입식품등의 사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은 제외함.
 -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1) 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
 -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수입식품등
4.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
5.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 [유전자변형식품등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 구분유통증명서 (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6. 소비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소비기한 연장사유서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등 (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이라 함)만 해당함]
7. 수출계획서 (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8.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9.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해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0. 수출 위생증명서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경우만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해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11. 2.부터 10.까지의 서류 외에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 √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 √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 √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다만,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접수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4항 전단).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압류·몰수된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

찾기 쉬운 생활법령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식품 등

다음의 수입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및 별표 8의2).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수입하는 공용의 수입식품 등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및 그 가족이 수입하는 자가소비용 수입식품 등

여행자가 휴대한 것 또는 국제우편물·국제특송화물(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에게 요청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수입식품 등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또는 광고물품으로서 그 표시가 명확한 수입식품 등

외국의 경제수역에서 해당 국가 선박과의 공동어업으로 포획·채취하여 대한민국 선박에서 냉동 또는 가공된 수산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제3호·제7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제4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영업소의 제조·가공시설에 부착·설치하여 사용하는 기계류와 그 부속품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비식용 원료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선박용품·항공기용품 또는 차량용품을 운송수단 안에서 그 용도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수입으로 보지 않는 수입식품 등

※ 선박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0호)

※ 항공기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1호)

※ 차량용품 :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해당 차량에서만 사용되는 것(「관세법」 제2조제12호)

무상으로 반입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제조하는데 사용하는 원료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유용한 법령정보
<p>Q. 여행지에서 올리브유를 사가지고 온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p> <p>A.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행자가 휴대한 것으로 자가소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p>

신고 대행자

식품 등의 신고 대행업

식품 등 신고 대행업을 하려는 경우 미리 식품 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2호, 제15조제1항 및 17조제2항 본문).

6.1.3. 수입금지

수입·판매 등의 금지 등

수입·판매 등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평가 또는 수입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본문).

수입·판매 등 금지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본문).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해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조치를 한 뒤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3항 단서).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금지조치로 인하여 영업상의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영업자는 식품위생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1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을 금지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식품 등에 대하여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수입·판매 등 금지 해제 절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5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식품 등의 제조업소,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할 경우에는 수입·판매 등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7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판매 등의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6항).

6.2. 식품 등의 검사

6.2.1. 수입검사

수입검사

수입검사 의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식품 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을 말함)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검사결과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1조제1항).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사를 할 때에는 식품 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식품 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2항).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

식품 등의 수입검사의 종류 및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

서류검사: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여부를 판단하는 검사

현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관능검사 포함)

정밀검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무작위표본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실시하는 검사(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포함, 우수수입업소에서 등록된 식품 등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등록된 식품 등은 제외)

검사종류	검사대상
서류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관광용으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은 제외함) ▶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 (자사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입하는 수입식품등 또는 식품 등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등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자신이 제조·가공을 의뢰한 제품의 원료를 말함. 이하 같음)로 수입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 등록을 한 자,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영업신고를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 √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수입하는 축산물 √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원료 또는 성분으로 인정받기 위해 수입하는 일정량의 연구·조사용 제품을 포함) ▶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대행기관에서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으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 또는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 식용향료 (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접촉되는 재질이 돌 또는 착색되지 않은 유리제 (가열조리용 유리제 및 납 함유 크리스탈 유리제는 제외함), 그 밖에 천연의 원재료로 만들어져 위해 우려가 없는 기구 및 용기·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를 받은 것 중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다시 수입을 하는 수입식품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2등급 및 3등급 수입식품 등으로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횟수 또는 기간이 남은 식품 등 (정밀검사를 하는 경우 대상으로 정하지 않은 수입식품 등은 포함하지 않음)은 제외] ▶ 외화획득을 위한 박람회·전시회 등에 전시 (소비자·관람자 등에게 제공·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음) 하기 위해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용 식품 ▶ 정제·가공을 거쳐야만 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의 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 등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서 재가공하여 수출하려는 수입식품 등 √ 국내에 유통 중인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서 그 반송사유가 수입식품 등의 변질이나 위생상 위해가 아닌 수입식품 등 ▶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력이 없는 수입식품 등 중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함) 중 정밀검사를 받아 수입된 후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으로 반출하여 단순 가공하고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에 반입하려는 식품 ▶ 구매대행 식품 등
<p>현장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임산물·수산물·축산물로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되지 않은 것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히 자르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말리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하거나 냉동하는 등 가공과정을 거쳐도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한 것 포함) ▶ 위의 서류검사의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현장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관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보세구역 안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정한 수거량의 10배 이하인 수입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p>정밀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1등급 수입식품 등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2등급 수입식품 등 √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해 실시함) √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 (다음의 기준에 따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2)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다음의 3등급 수입식품 등 √ 특별관리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하는 식품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1)·2)·4)·5), 같은 호 다목1)·3) 및 같은 Ⅱ. 개별기준의 제8호바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 동안의 기간 √ 행정처분을 받고 불복절차가 진행중인 자로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의 경우에는 제품별 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연속하여 10회 실시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수입식품 등 :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실시 ▶ 구매대행 식품 등으로서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식품 등 (이 경우 구매대행을 요청한 자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함) ▶ 수입신고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다시 수입신고하였거나 수입신고가 반려된 횟수를 합산하여 3회 이상인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p>무작위표본검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밀검사를 받은 수입식품 등이나 서류검사 또는 현장검사 대상인 수입식품 등 중 수입식품 등의 종류별 위해도 등을 감안하여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검사 생략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된 식품 등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의 검사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3항).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

해외우수제조업소로 등록된 자가 수출하는 수입식품 등

영업자가 신고한 해당 식품 등에 대하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그 밖에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 합격품의 처분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식품 등 (건강기능식품은 제외)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전자문서를 포함)을 수입신고한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 (전자문서를 포함)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5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지 제28호서식 및 별지 제29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다음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한 경우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조건부 수입신고 대상	제출 서류 기재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선한 식품류 √ 살아 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산물 √ 신선하거나 냉장한 농산물·임산물 (썩었거나 상한 것이 조금 있는 경우로서 이를 선별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함) · 원료의 수급(需給) 또는 물가 조절을 위하여 긴급히 수입하는 식품 등 ·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경우로서 통관 후 시중에 유통·판매하기 전에 그 위반사항을 보완할 수 있는 식품 등 · 무작위표본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세창고에서의 출고 예정일 ·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 또는 보관창고에 관한 다음의 사항 √ 입고 예정일 √ 소재지 √ 보관책임자

수입신고인은 위의 제출 서류 중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

조건부 신고대상 식품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검사를 하고, 그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제5항 및 별지 제28호서식).

수입신고의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영업소에서 수입하는 식품 등

찾기 쉬운 생활법령

최근 2년 이내에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 식품 등 (그 부적합 통보를 받은 식품의 제조·가공 등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수입되는 경우에 한정)

위해식품에 관한 정보 등이 확인되어 따로 검사 중인 식품 등

그 밖에 위해발생 우려가 있어 조건부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입식품 등

검사 불합격품 등의 처분

검사 불합격 통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위반통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포함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라 함)은 식품 등을 수입검사한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식품위생법」 제7조 및 제9조)에 맞지 않으면 해당 검사에 적용한 검사방법, 검체의 채취·취급방법 및 검사 결과를 해당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가 작성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영업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제2항).

부적합 통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한 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재검사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위반통보를 받은 영업자가 그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검사한 제품과 같은 제품(같은 날에 같은 영업시설에서 같은 제조 공정을 통하여 제조·생산된 제품에 한정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 2곳 이상에서 같은 검사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통보받은 검사 결과와 다를 때에는 그 검사기관의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검사항목 등 일정한 검사항목은 재검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2항).

재검사 요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출한 검사 결과가 검사 결과와 다르다고 확인되거나 검사에 따른 검체(檢體)의 채취·취급방법, 검사방법·검사과정 등이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고 해당 영업자에게 재검사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검사 수수료와 보세창고료 등 재검사에 드는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합니다(「식품위생법」 제23조제3항).

부적합 식품 등의 처리 방법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통보를 받은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찾기 쉬운 생활법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곡류 또는
두류로서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폐기